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2,923,455	13,587,704
일반회계	412,473,384	12,374,202
특별회계	40,450,071	1,213,502
공기업특별회계	24,035,852	721,0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990,812	479,72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45,040	241,351
기타특별회계	16,414,219	492,4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84,900	56,54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11,500	12,34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59,744	58,792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019,231	30,57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50,189	22,506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260,805	97,82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65,000	82,95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9,195	3,87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91,108	8,733
도시개발특별회계	1,209,195	36,276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80,000	2,400
주택사업특별회계	442,552	13,27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0,800	6,324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2,000,000	6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83,88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
5. 재해대책및 복구경비